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민원번호 : 2AA-1607-257634

민원내용 : 불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각각의 업무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료법 제27조) 및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의료기사법 제9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사선동위원소 테크네슘99'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고, '정맥주사행위'는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에 해당되어, 테크네슘 99m 정맥주사는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의료기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가 일반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개별 의료행위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중복될 수도 있는 점과 해당 방사성의약품이 안전한 검사약품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핵의학과'에서 '테크네슘 99m(0.5cc 이하의 적은 양에 한정)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방사선사 또는 간호사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하에 테크네슘 99m 정맥주사를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핵의학과 신규 방사선사는 주사 관련 기본교육 및 응용교육(실습 포함)에 관한 교육을 최소 5시간 이상(경력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재교육) 이수하고, 신규 간호사는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관련 안전관리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최소 5시간 이상(경력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재교육) 이수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의료자원정책과() 주무관, 044-202-245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